

# 화성동탄2 동탄역 플라세 더 테라스

##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

- 동탄역 플라세 더 테라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추가 임차인 모집은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(2025.02.12.(수))(이하 임차인모집공고일) 기준으로 진행하며, 이는 청약신청자의 자격조건(청약신청자 나이, 국적, 무주택자격요건 등)의 판단기준입니다.
- 본 주택의 청약자격은 임차인모집공고일(2025.02.12.(수)) 현재 무주택자(청년 특별공급)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일반공급)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.
- 본 주택은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,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.
-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며,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[2022.08.31.(수)] 본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.

### 1. 주택공급내역

- 공급위치 :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95
- 공급규모 : 공동주택 지하 1층 ~ 지상 최고 4층 11개동 총 166세대(특별공급 35세대 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
- 공급대상

타입	세대수	세대별 계약면적					추가 임차인 세대수	
		세대별 공급면적			기타 공용면적 (부대시설 등)	계약면적	특별공급	
		주거 전용면적	주거 공용면적	공급면적			청년	계
104B	35	104,3774㎡	22,7591㎡	127,1365㎡	92,4817㎡	219,6182㎡	35	35
<b>합계</b>							<b>35</b>	<b>35</b>

### 2. 신청자격(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)

구 분	특별공급 (청년)
공통	임차인모집공고일(2025.02.12.(수))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)
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주택자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.</li> <li>가. 연령 : 만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(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)</li> <li>나. 혼인 : 혼인 중이 아닐 것</li> <li>다. 소득 :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</li> <li>(1)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(이하 "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"이라 한다)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</li> <li>(2)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: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</li> </ul>

### 3. 주요일정

구 분	서류접수 일정	추첨 및 계약
일 정	2023.02.12.(수) 11:00 이후	2025.02.12.(수) 11:00 이후
방 법	화성동탄2 플라세 더 테라스 내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홍보관 현장접수	화성동탄2 플라세 더 테라스 내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홍보관 추첨 후 계약

- 화성동탄2 플라세 더 테라스 주택홍보관에서 서류접수, 추첨 및 계약이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추첨 후 계약진행 예정이오니 계약금을 이체 가능하도록 준비(스마트폰뱅킹, 이체한도 확인 등)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추첨시 청약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하며, 대리인 참여시 청약이 무효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4. 구비서류

구 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○		신청자격별 구비서류	•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
	○		계약금 무통장 입금증	• 견본주택에서 계약금(현금 및 수표) 수납 불가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공동주택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

	○	인감도장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, 대리인 신청 불가	
	○	신분증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주민등록표 등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	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	
	○	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	• 세목전체 납부내역 포함	
	○	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•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	
	○	추가 개별통지 서류	•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	
특별 공급	청년	○	혼인 관계증명서	•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, "상세"로 발급
		○	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	•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○	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	•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
		○	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	•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(배우자 대리 포함)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_청약자 기준	
	○	위임장	•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	
	○	대리인 신분증, 인장	•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	

- 상기 모든 증명서류(계약 시 구비서류)는 임차인모집공고일[2025.02.12.(수)]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은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처리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주민등록표 등(초)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,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 신청 접수 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### 5. 특별공급(청년) 소득산정 기준

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기준	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		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100%이하	3,482,964원	5,415,712원	7,198,649원	8,248,467원	8,775,071원	9,563,282원	10,351,493원	11,139,704원
110%이하	3,831,260원	5,957,283원	7,918,514원	9,073,314원	9,652,578원	10,519,610원	11,386,642원	12,253,674원
120%이하	4,179,557원	6,498,854원	8,638,379원	9,898,160원	10,530,085원	11,475,938원	12,421,792원	13,367,645원

-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=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1인당 평균소득(788,211원) × (N-8) ※ N : 9인 이상 가구원 수
-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  
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-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 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(21번 항목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)

#### 6. 특별공급(청년) 소득입증서류

구 분		내 용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, 재직증명서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
	신규취업자	•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• 재직증명서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	• 세무서
	간이과세자		
	면세사업자		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•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	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	•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	• 국민연금관리공단 • 세무서
	법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 법인등기부등본	• 세무서
	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	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•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• 수급자 증명서	• 동사무소

비정규직 근로자	•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(직인날인)	• 해당직장
일용직 근로자		
무직자	•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건본주택 비치)	• 접수장소

※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-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(의료) 보험증이 없는 경우 :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: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.
-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,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: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
-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,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상기 제출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상기 구비서류 외 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